

# 산업안전의의와 안전보건관리체계

## CONTENTS

### 1. 산업안전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

- 안전관리의 의의 및 목적
  - 안전용어 정의
- 산업재해의 조사와 분석
  - 산업안전의 실천

### 2. 안전보건관리체계
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
-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



**대한안전교육협회**  
KOREA SAFETY EDUCATION ASSOCIATION

## part 1. 산업안전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

### 1. 안전관리의 의의 및 목적

#### 1) 안전관리란?

가. 산업안전관리

- 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든 활동
- 비능률적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
- 생산성의 향상과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

#### 2) 안전관리의 목적

- 인명의 존중
- 사회복지의 증진
- 생산성의 향상
- 경제성의 향상

#### 3) 산업안전의 의의

가. 넓은 범위에서의 산업안전

-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
- 산업을 통해 직,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생존권 침해도 받지 않는 상태
- 적극적 안전

나. 좁은 범위에서의 산업안전

- 산업을 통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
- 사고의 결과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
- 소극적 안전

#### 4) 산업 안전관리의 중요성

가. 사회적 책임

-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
- 산업 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

#### 나. 인도주의적 책임

- 인간 모두에게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
- 피할 수 있는 사고를 야기해 인명과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은 도덕적 죄악

#### 다. 회사적인 측면

- 근로자의 사기진작
- 생산능률의 향상
- 대내외 여론의 신뢰성 유지 확보
-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의 보장

### 5) 안전사고와 재해

#### 가. 사고

-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가 원인
-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, 직·간접적으로 인적, 물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함

#### 나. 무재해 사고

- 손실(loss)은 없었지만 '아차'하는 위험한 순간
- 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 대책에 있어 간과하면 동종 재해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

#### 다. 재해사고

- 인적,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
- 피해 대상에 따라 분류하나 인적·물적 손실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많음

#### 라. 재해

##### ① 정의

- 재난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

##### ② 종류

-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인재 : 재해 예방 원칙에 따라 예방 가능 재해(98%)
- 천재지변에 의한 천재 : 불가항력적인 재해 (2%)

### 6)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

- 안전관리 → 안전기술
- 재해예방(소극적 대처) → 위험방지(적극적 대처)

## 7) 녹색자의 기원

- 십자 모양의 녹색 표식으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상징
- 녹색자기는 안전운동의 상징적 표시이며 안전운동의 근본
- 서양에서는 인애(仁愛), 동양에서는 복덕(福德)을 의미

## 8)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

- 1906년 미국제강회사(US Steel)의 게리(E.H Gary) 사장의 경영 목표에서 나옴
- "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(safety first)" 주장

## 9)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

가. 산업안전보건의 날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
-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 통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
-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

나. 산업안전 보건주간

-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

다. 산업안전 보건대회 준비기간

-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촉진,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

## 2. 안전용어 정의

### 1) 안전의 사전적 정의

가. 웹스터

- 상해, 손실, 감손,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태
- 안전은 그와 같은 자유를 위한 보관, 보호 또는 방호장치와 시건장치, 질병의 방지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말함

나. 브리태니커

-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

다. 국어큰사전

-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발생 염려 없이 편안한 상태,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

## 2) 안전용어 정의

### 가. 안전사고

-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능력을 저하시키며 직접, 간접적으로 인명,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

### 나. 재해

-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

### 다. 산업재해

-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현상

### 라. 작업환경 측정

-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취급 및 그 분석, 평가를 하는 것

### 마. 안전보건 진단

-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, 평가

### 바. 중대재해

-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
  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-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  -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## 3)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종류

- 중상해 : 부상으로 인해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
- 경상해 : 부상으로 1일 이상 14일 미만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
- 경미상해 : 부상으로 8시간 이하의 휴무,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태

## 4)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

### 가. 사망

-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입은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것
- 노동손실일수 7,500일

#### 나.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

- 부상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
- 신체장애 1-3등급, 7,500일

#### 다.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

- 부상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
- 신체장애 4-14급

#### 라.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

-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
- 신체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장해

#### 마.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

-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상해가 아닌 상해
-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

#### 바. 응급(구급)조치 상해

- 부상을 입은 다음 1일 미만의 치료를 받은 상해
- 치료 후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

### 5) 직업병

#### 가. 직업병의 정의

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, 직업의 종류, 환경 및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

#### 나. 재해성 질환

- 시간적으로 명확한 재해에 의하여 발병

#### 다. 급성 또는 만성

- 업무상 취급하는 물질과 업무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환

## 3. 산업재해의 조사와 분석

### 1) 산업재해 조사

#### 가.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

- 재해발생의 원인을 밝혀 같은 종류의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

#### 나. 재해조사의 원칙

- ① 3E, 4M에 따라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
  - 3E : 관리적, 교육적, 기술적
  - 4E : 최근 우리나라는 3E에 환경 추가
  - 4M : 인적요소, 기계설비적 요소, 작업적인 요소, 관리적인 요소
- ② 육하원칙(5W1H)에 의거 과학적 조사
  -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
- ③ 산업재해조사표 작성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30호 서식 참고

#### 다. 산업재해 조사 순서

1. 사고조사반의 구성(단독 조사금지)
2. 조사항목 결정
3. 조사방법의 설정
4. 조사자료 범위
5. 조사 협력기관 또는 협조자 선정
6. 종합
7. 검증방법

#### 라. 사고조사 방향의 설정

- 사고에 대한 순수한 원인 규명
-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
- 생산성 저해요인 색출을 위한 종합적 조사
- 관리, 조직상의 장애요인 색출

#### 마. 재해 조사과정 3단계

- 현장보존 → 사실의 수집 → 목격자, 감독자, 피해자 등의 진술

#### 바. 재해의 조사방법

- 재해발생 직후에 행함
- 현장의 물리적 흔적(물적 증거)을 수집
- 재해현장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, 기록

- 목격자, 현장책임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시의 상황을 들음
- 재해 피해자로부터 재해 직전의 상황을 들음

#### 사. 재해조사 시 조사 사항

- 피해자의 신상 : 성명, 연령, 소속 등
- 상해 정도
-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모든 행동
-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태
- 기타 사고 관계자의 진술
- 관련된 설비, 기구 및 공구의 상태
- 간접원인이 된 설비, 기계의 배치 또는 상태
- 현행작업 방법의 적합성
- 피해자의 이전 피해 경험 여부
- 재산상의 손실액

#### 아. 사고 조사의 근거자료

- 기인물과 가해물의 확보
- 과거의 재해사고 사례
- 점검 및 자체 검사 결과표
- 최근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자체 조사 기록
- 건강진단 기록표
- 피해자 개인 인사 기록표
- 공정도와 재해 상황도
- 감독 목격자의 진술서 및 가족 의견서
- 안전보건교육 관계 기록
- 보호구의 상태

#### 자. 사고의 발견방법

- 예측진단 :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이용
- 장비 진단
- 육안(안전순찰) 면담 과거의 기록 검토
- 사고조사

## 2) 산업재해 원인분석

### 가. 재해 원인 분석

#### ① 개별적 원인분석

- 개별적 재해대상
- 특별재해나 중대재해의 원인분석에 적합
- 특성 요인도

#### ② 통계적 원인분석

- 발생경향, 요인, 공통적 유형을 파악하여 동종 재해 예방
- 파레토도, 크로스분석, 관리도

### 나. 시스템 안전 분석

- 인간-기계 시스템 분석
-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
- 귀납적 분석 및 연역적 분석
- 결함수 분석, 사건수 분석, 고장형태와 영향해석, 특성요인도, MORT 해석

## 3) 산업재해 통계

### 가. 재해통계의 목적

-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안전성적 평가 자료로 활용
- 재해의 발생경향, 요인, 공통적 유형을 파악,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동종 재해를 예방함

### 나. 재해율의 종류

#### ①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사용되는 재해율의 종류

- 재해율(%), 천인율, 사망 만인율, 도수율(건, 회), 강도율(일)

#### ② 강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손실 일수

- 국제기준

- [사망자 손실일수 + 신체 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+ (휴업일수 x 300/365)]

- 우리나라의 손실 일수

- [사망자 손실일수 + 신체 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+ 부상자 및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산]

#### 4) 산업재해 손실비용

##### 가. 경제적 손실 추정액

-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는 하인리히 방식 채택
- 간접 손실액이 직접 손실액의 4배로 보고 합산 금액을 경제 손실 추정액으로 계산

##### 나. 직접 손실액, 간접 손실액

- 직접 손실액 : 요양비, 보상비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
- 간접 손실액 : 보상비, 근로시간 손실 등 물적 손실, 작업중지 등 생산손실 등

#### 5) 안전 활동과 무재해 운동

##### 가. 사업장의 안전 활동 종류

- 위험예지훈련, 지적확인, 툴박스미팅(TBM)
- 안전순찰, 아차사고 보고, 관리(PDCA) 사이클, STOP기법 도입
- 안전제안, 안전조회, 캠페인(무재해운동, 보호구 착용), 경진대회 등
- High Five 운동, 3대 다발재해(전도, 협착, 추락) 줄이기 등

##### 나. 무재해 운동

###### ① 대상

- 전 사업장

###### ② 무재해 정의

-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
- 500만 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없는 경우
- 직업병이 없는 경우

#### 6) 기업경영과 산업안전

##### 가. 안전경영

###### ① 정의

- 모든 근로자와 작업공정 전체에 만의 하나의 사고 개연성에도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

###### ② 목적

- 인도주의 실현, 재산상의 손실방지, 근로의욕 제고, 노사관계 개선
- 안전관리(Safety management) = 손실관리(Loss control)

#### 나. 안전경영 전략 5단계

- ① 1단계 안전의 위상정립
  - 기업경영의 기반요인으로 자리매김
- ② 2단계 안전경영의 기반조성
  - 조직체계, 기술확보, 인력확보
- ③ 3단계 안전경영의 종합추진
  - 시스템 안전관리, 자율 안전관리
- ④ 4단계 위험의 통제
  - 위험성 평가, 잠재위험 통제, 동종위험 통제
- ⑤ 5단계 무재해의 실현
  - 무상해, 무질병, 무손해의 사업장 구축

#### 다.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

- ① 국내 인증
  - KOSHA 18001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제조업, 건설업)
  - K-OHSMS / OHSAS 45001 - 한국인정지원센터
- ② 국외 인증
  - 다국적(연합) 인증 - OHSAS 18001
  - 외국 인증기관 - BSI (영국왕립표준협회), BVQI(영국 인증 서비스) , LRQA(로이드 인증원), DNV(노르웨이 선급협회), TUV(독일 기술 검사기관)

## 4. 산업안전의 실천

### 1)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

가. 규칙적인 생활로 항상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

-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불안정 할 때에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움
- 수면부족, 운동부족, 과식, 친구들과의 지나친 어울림 등이 없도록 조심

나.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작업에 집중

- 작업 전 복장이나 공구 등에 결함이나 불충분한 것은 없는가 점검
- 작업방법이나 기계, 공구의 사용방법 교육받은 대로 실행
-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작
-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상사에게 문의 후 조치

다. 작업은 물건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

- 물건(재료,물품,도구,설비)과 인간의 물건에 대한 행동으로 작업
- 물건의 안전을 갖추었더라도 인간의 행동에 결함이 있으면 사고 발생
- 근로자의 부주의, 규정 된 표준 작업의 불이행, 자기 체력을 무시한 행동이 재해의 원인이 됨

라. 자세나 동작의 피로의 관계

- 불량한 자세나 동작은 피로를 가중
- 불량한 자세나 나쁜 동작을 방치하면 만성적인 질병으로 발전
- 올바른 동작을 습관화하여 몸에 익히도록 해야 건강장해 예방

마. 작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

- 작업 종료 시 해이한 마음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
- 작업 후 뒷정리 하는 습관
- 사용한 기계나 공구의 점검과 손질, 주위의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함

## 2) 산업안전을 위한 직장 에티켓

가. 안전의 기본 정리, 정돈, 청소, 청결

- 정리 : 불필요한 것은 구분하여 즉시 처분
- 정돈 : 필요한 것은 사용하기 쉽고 꺼내기 쉽게, 안전한 상태로 놓아둠
- 청소 : 평소에 쓰레기, 먼지 등 더러운 것은 치움
- 청결 : 의복, 작업장을 더럽힌 채로 두지 말고 깨끗하게 해둠

나. 청결한 직장을 위한 4가지 실천

- 불필요한 물건을 들여놓지 않음
- 간편하고 정확한 정돈
- 더러워지면 바로 깨끗이 함
-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연구

다. 작업장의 안전점검

- 작업장 점검 : 분진 가스 소음 매연의 방출 상태 점검
- 채광과 조명 : 전구와 유리창의 더러움을 확인
- 설비 점검 : 작업 시작 전 5분간 실시
- 구급용품 :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 점검

라. 근로자의 건강유지

- 보호구의 착용 : 작업에 적당한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
- 복장 :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
- 건강 유지 : 규칙적인 운동 등의 방법
- 활기찬 인사 :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

마. 복장 안전수칙

- 작업복과 보호구는 단정하게 꼭 맞도록 착용
- 작업복 상의를 벗거나 신발을 구겨 신지 않음
- 회전기기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금지
- 작업복에 기름이나 물이 묻지 않도록 함

바. 인간관계

- 누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음
-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 하는 데서 좋은 인간관계가 시작
- 일상의 인사를 나누는 일

샤. 안전에 대한 대화

- 안전에 대한 대화는 사업장 내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함
- 불안, 불편, 불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화
- 안전문제를 노출시켜 개선책을 의논
- 안전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

아. 안전수칙 지키기

- 작업 전에 공구는 반드시 점검하고 고장 난 것은 사용하지 않음
- 무리한 작업 자세나 행동은 하지 않음
- 작업을 하기 쉽도록 주위는 언제나 정리 정돈
- 공동 작업에서는 연락이나 신호를 확실히 하고 지적 확인을 함
- 이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켜 수리
- 작업순서를 지킴, 무심코 지키지 않은 작업 순서가 실수의 원인이 됨
- 상사의 지시와 지도를 충분히 따름

## part 2. 안전보건관리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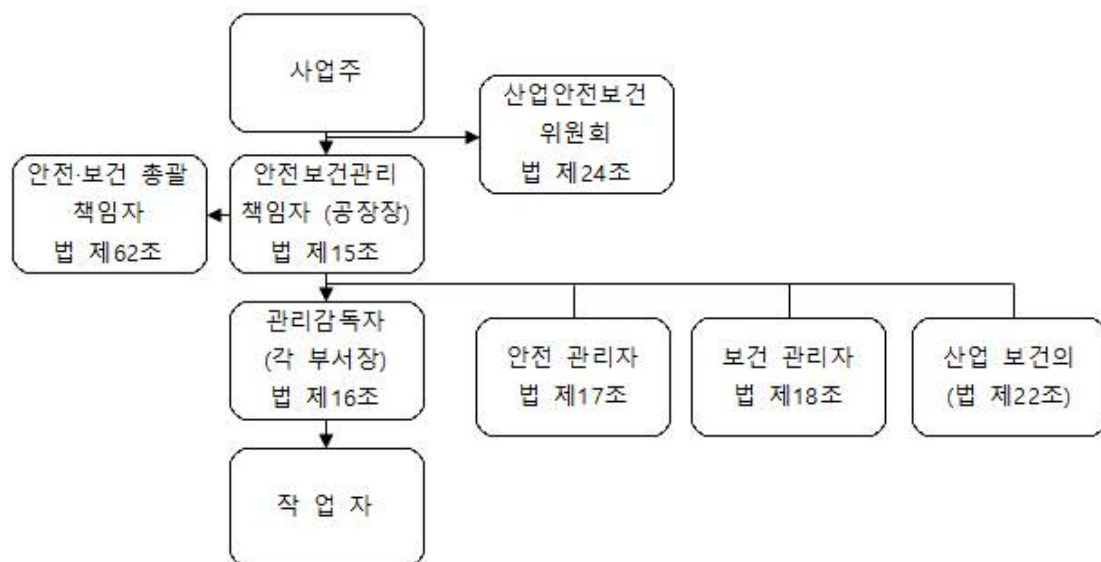
### 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

#### 1)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란?

가.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

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하며,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로 사업의 종류, 규모,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을 구성·운영해야 함
-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,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

나.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도



#### 2) 안전관리조직의 형태

가. Line 형

-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

나. Staff 형

-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
- 안전업무만을 전담하는 스텝을 둔 형태
- 스텝
  - 안전업무에 대한 계획, 검토, 조사, 보고 등을 실시하고, 이를 통해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 안전과 관련된 기술지원 실시

#### 다. Line-Staff 형

-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
-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
  -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스텝
  -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 안전업무 수행
  - 스텝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결정 → 라인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편성된 조직

## 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

### 1)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#### 가.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정의

-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·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 ·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

#### 나.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내용

##### ① 선임대상 사업장

-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
- 총 공사금액(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)이 2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- 시행령 별표2 제23호부터 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
- 그 외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

##### ② 안전보건책임자의 직무

- 총괄, 관리 업무
  -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-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
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증명서류 비치의무

-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
-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
- 증명서류 : 사업장 내 위임전결규칙, 인사발령지, 현장대리인선임계 등

## 2) 관리감독자

### 가. 관리감독자의 정의

-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"관리감독자"로 지정
-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,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(법 제16조제2항)

### 나. 관리감독자의 직무

-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
-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-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-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(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 및 보건관리자(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의 지도·조언에 협조

-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다. 관리감독자의 자격
-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어야 함(법 제16조 제1항)

라. 사업주의 지원

-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(시행령)제14조제2항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”는 “관리감독자”로 “법제15조제1항”은 “제1항”으로 봄

### 3.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

#### 1) 안전관리자

가. 안전관리자란

-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,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·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

나. 안전관리자의 선임

① 대상사업장

-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
-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 원(토목공사 150억)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

②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

-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 사업장으로서 그 소재지가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)지역에 소재하거나, 사업장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한 경우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

다. 도급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

① 일반원칙

-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의

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

② 적용대상 도급사업

- 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과 동일
-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, 선박 및 보트 건조업, 토사석 광업
-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
-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

③ 수급인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

-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(시행령 별표 3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, 이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수(공사금액)는 도급인의 근로자수(공사금액)에 포함시키지 않음

④ 수급인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수급인인 사업주(하수급인 포함)의 경우에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

⑤ 안전관리자의 자격

-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발표 4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음

⑥ 안전관리자의 직무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
-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, 조언
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업무수행내용의 기록·유지
-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⑦ 안전관리자의 지도 · 조언

-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· 관리업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· 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· 관리책임자 ·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(법 제20조)

⑧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

-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“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”(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),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(건설업)(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함

⑨ 안전관리자 증원·교체임명 명령

■ 의의

-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교체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(법제17조제3항)

■ 증원·교체임명 명령의 요건

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음 (시행규칙 제12조제1항)
-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
-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
-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■ 증원명령의 절차

-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(시행규칙 제12조제2항)
-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⑩ 안전관리자 선임완화

■ 의의

-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·규모·수 및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안전관련법상 안전관리자

제도와 중복선임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완화하고 있음

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

- 제29조 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
- 제30조 (중소 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)
- 제31조 (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)
- 제36조 (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)
- 제39조 (공동채용자의 관리 등)
- 제40조 (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)

⑪ 위반에 대한 조치

■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

- 1차 위반 시 500만원, 2차 위반 시 5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

■ 안전관리자의 증원·교체명령을 위반한 경우

- 1차 위반 시 500만원, 2차 위반 시 5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

## 2) 안전관리전문기관

### 가. 안전관리전문기관

-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·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### 나. 안전관리의 업무위탁 가능 사업

-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
- 기업활동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음

### 다. 지정요건

-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분야는 제외)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함
- 구체적인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7에서 상세히 규정

## 라. 지정절차

### ① 지정신청

-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- 장관,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·장비 증명서류, 최초 1년간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,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·장비명세서
-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## 마. 업무 수행 지역

-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(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)으로 함

## 바. 위탁계약

-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때에는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함

## 사. 업무수행기준

-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
-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함
-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,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,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

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아.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행정처분

①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

-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함
- 지도·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안전·보건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」(고용노동부 예규)에 정하고 있음

② 행정처분

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
-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·과실 여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(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)